

제64조(학위논문 작성체제 및 양식) ① 학위논문 작성체제 및 양식은 별첨과 같다.

② 본 대학원의 학위논문 인쇄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판 중 : 4.6배판(18.5cm×25.5cm)
2. 지 질 : 7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3. 인쇄방식 : 양면 또는 단면으로 인쇄
4. 표지색깔 : 흑색
5. 겉표지, 제출문 및 인준서: <별지서식 제1호>의 겉표지는 명조체 2호(22 포인트) 활자로 하
되 석사학위논문은 은색, 박사학위논문은 금색(하드커버에 한함)으로 인쇄하여야 하고, 제출
문과 석사학위인준서 및 박사학위인준서는 각각 <별지서식 제2호>, <별지서식 제3호>, <별지서
식 제4호>에 준함.
6. 제본식 : 클로스 양장
7. 논문의 분량(매수) : 제한 없음

[별지 제1호서식 : 국문] (개정 2009. 3. 2.)

< 겉 표 지 >

(○ 사) 학 위 논 문 제 목 년 최 ○ ○ 2cm	2cm

※ 속표지는 표지와 동일

< 겉 표 지 >

Si Rip Lee Thesis title The University of Seoul 2△△△ 2cm	2cm			3cm
		7cm	[Ph.D. Dissertation / Master Thesis]	7cm
		2cm		
		Thesis Title		
		by Si Rip Lee		
		5cm		5cm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February 2△△△		
				3cm

※ 속표지는 표지와 동일

< 제 출 문 >

		3cm			
3cm	논	문	제	목	3cm
지도교수 ○ ○ ○					
이 논문을 ()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 년 월					
5cm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5cm
최 ○ ○					
		3cm			

< 제 출 문 >

	3cm	
3cm	Thesis Title	3cm
by		
Si Rip Lee		
A [Ph.D. Dissertation / Master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he University of Seoul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 Master of OOO]		
February 2△△△		
5cm	Approved by	5cm
Ji Do Kim (지도교수 이름)		
Major Advisor		
	3cm	

[별지 제3호서식 : 석사, 국문] (개정 2009. 3. 2.)

< 인 준 서 >

	4cm
최 ○ ○ 의 ○ ○ 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div>심사위원장인</div>
<div>6cm</div>	<div>심 사 위 원인</div>
	<div>심 사 위 원인</div>
<div>6cm</div>	<div>6cm</div>
20 년 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4cm

< 인 준 서 >

	3cm	
3cm		3cm
This certifies that the master thesis of [Si Rip Lee] is approved.		
_____[signature]_____ Thesis Committee Chair: [Ji Do Kim]		
_____[signature]_____ [typed name (Thesis Committee Member #1)]		
_____[signature]_____ [typed name (Thesis Committee Member #2)]		
5cm		5cm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December 2△△△] 3cm		

[별지 제4호서식 : 박사, 국문] (개정 2009. 3. 2.)

< 인 준 서 >

	4cm
최 ○ ○ 의 ○ ○ 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_____ 6cm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_____ 6cm	20 년 월 _____ 6cm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4cm

< 인 준 서 >

3cm		
3cm		3cm
This certifies that the [Ph.D. dissertation] of [Si Rip Lee] is approved.		
[signature]		
Thesis Committee Chair: [Ji Do Kim]		
[signature]		
[typed name (Thesis Committee Member #1)]		
[signature]		
[typed name (Thesis Committee Member #2)]		
[signature]		
[typed name (Thesis Committee Member #3)]		
[signature]		
[typed name (Thesis Committee Member #4)]		
5cm		5cm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December 2△△△]		
3cm		

<별첨> (개정 2009. 3. 2, 2010.2 . 24, 2015. 7. 7)

학위논문 체제 및 양식

1. 학위논문 체제

1) 논문기재 순서

- (1) 겉표지
- (2) 제출문
- (3) 인준서
- (4) 국문초록(본문이 외국어인 경우 외국어초록) (개정 2015.7.7)
- (5) 속표지(표지와 동일)
- (6) 목차
- (7) 기호, 수표 및 도표의 목차(있는 경우에 한함)
- (8) 본문
- (9) 참고문헌
- (10) 부록, 기타 (있는 경우에 한함)
- (11) 영문초록(본문이 외국어인 경우는 국문초록) (개정 2015.7.7)
- (12) 감사문(있는 경우에 한함)
- (13) (삭제 2015.7.7)

2) 작성 요령

(1) 표지<별지서식 1참조>

① 제목과 성명은 국문으로 하며(한자 가능) 논문제목의 글자크기는 22포인트로 하고, 부제의 글자크기는 16포인트로 한다. 영문제목이 있는 경우 국문제목 밑에 표기한다. 외국인의 경우 성명은 외국어로만 표기한다.

② 논문 발간 연도는 학위 수여일이 속하는 연, 월까지 표기한다.

③ 표지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중앙선을 중심으로 좌우 균형 있게 배열한다.

(2) 제출문 <별지서식 2 참조>(개정 2015. 7. 7)

①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제출일자는 연·월까지 표기한다.

② 모든 사항은 중앙선을 중심으로 좌우 균형 있게 배열한다.

(3) 인준서<별지서식 3,4 참조>

(4) 국문초록, 외국어초록

① 본문이 국문인 경우는 앞에 국문초록, 본문 뒤에 외국어초록을, 본문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앞에 외국어초록, 뒤에 국문초록을 작성한다.(개정 2015. 7. 7)

②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내는 주요어(Keyword)를 표기한다. 주요어는 논문 검색시 색인어로 가능한 단어로서 논문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부터 나열한다.

(5) 페이지 매기기

① 표지와 제출문, 인준서, 국문초록에는 페이지를 매기지 않으며, 목차, 기호설명, 표 및 그림목차

는 소문자 로마숫자로 일련번호를 매긴다(예 : i , ii, iii,···).(개정 2015. 7. 7)

② 본문부터 감사문까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를 매긴다. 이 때 본문 중의 표 및 그림에도 페이지를 매긴다. (개정 2015. 7. 7)

(6) (삭제 2015. 7. 7)

(7) 목차

① 목차에는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등을 포함시키며, 제목 다음에 점선을 긋고 페이지 수를 단다.

예)

목차		i
제1장 서론		1
제2장 (제목)		10
제1절 (제목)		10
제2절 (제목)		20
1. (제목)		20
2. (제목)		30
제3장 (제목)		80
제4장 결론		100
부록		120
영문초록		130

② 장, 절, 항의 구분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여 사용한다.

예 i) 제1장 서론

예) ii) 1. 서론

제2장

2.

제1절

1.1

1.

1.1.1

2.

1.1.2

1)

1.1.2.1

2)

1.1.2.2

(1)

1.1.2.2.1

(2)

1.1.2.2.2

①

1.1.2.2.2.1

②

1.1.2.2.2.2

i)

1.1.2.2.2.2.1

ii)

1.1.2.2.2.2.2

2. 주와 참고문헌 (삭제 2015. 7. 7)

3. 논문작성 지침(신설 2015. 7. 7)

1) 글자 크기와 문단 모양

(1) 초록, 본문 등의 내용 글은 11포인트로 하고, 장의 제목은 16포인트, 절의 제목은 14포인트,

그 외의 글자 크기는 자율적으로 정한다.

(2) 내용 글의 줄 간격은 200% 더블 스페이스로 한다.

2)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와 그림의 바로 위에 표기하되, 제목 앞에 각각 <표 1> 및 <그림 1>를 표기한다. 글자모양 및 크기는 본문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와 그림에 해설과 출처 등이 필요한 경우는 주) 혹은 출처) 등으로 표와 그림 하단에 표시한다. 이 경우, 글자크기는 9포인트로 한다.

3) 주석과 본문의 문헌인용

(1) 주석은 본문에 대한 참고사항, 보조설명을 본문에 삽입할 경우 본문 내용이 난해해지거나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주석의 글자크기 9포인트로, 글자모양은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① 주석은 각주(脚註; footnote)의 형태로 해당 페이지의 아래 부분에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각장의 말미에 미주(尾註)로 달수도 있다.

② 주석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며, 주석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각 장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붙일 수 있다.

(2) 논문 본문에 인용된 문헌의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중 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① 논문본문에서 인용된 해당 문장(혹은 단어)에 주석으로 표시하고, 그 인용문헌을 주석의 내용으로 기재하는 방법

가. 서적, 논문 등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특정 페이지를 인용한 경우는 해당 인용 페이지를 반드시 표시한다.

a. 서적인 경우 :

(i) 동양서 : 저자, 『책명』 (제O판),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김세무, 『세무학개론』 (제2판), 세학사, 2003, 21-23면.

(ii) 서양서 : 저자, 책명(이탤릭체), (출판지 :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수.

예) Slemrod, Joel, *Do Taxes Matter : The Impact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Cambridge, MA: MIT Press, 1990, p.35.(혹은 pp.35-40).

b. 논문인 경우 :

(i) 동양서 : 필자, “논문명”, 『간행물 명칭』 제O권 제O호, (학회/출판사, 발행연월), 면수.

예) 김세무, “한국조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0, 5-6면.

김세무·이세무, “미국조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권 제2호, 7-8면.

(ii) 서양서 : 필자, 논문명, 간행물 명칭(이탤릭체), 권수(Vol. 생략), 호수(No. 첨가), (발행연월), 페이지수.

예) Avi-Yonah, Reuven S., For Haven' s Sake : Reflection on Inversion Transactions, *Tax Notes* 95, No. 12, 2002, pp. 1794-1795.

나. 재인용의 경우 : 일련번호의 각주 내에서 일단 완전한 형식의 주를 기입한 뒤 동일한 문헌이나 논문을 다시 인용한 경우에는 약식주를 사용한다. 약식주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a. 앞에서 인용한 논저를 재차 인용한 경우에는 필자명 다음에 앞의 책(또는 앞의 논문, 영문일 경우에는 *op. cit.*(이탤릭체))이라고 쓴다.

예) 홍길동, 앞의 논문, 20면.

Auerbach, A. J., *op.cit.*, pp.61-63.

b. 바로 앞의 주에서 인용했던 논저를 다시 인용한 경우에는 필자명 다음에 위의 책(또는 위의 논문, 영문일 경우에는 *Ibid.*(이탤릭체))이라고 쓴다. *Ibid.*는 같은 페이지의 바로 앞 주에 인용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판과정에서 페이지가 달라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② 논문본문에서 인용된 해당 문장이 있는 경우 문장의 끝에 괄호를 사용하여 저자명, 발행연도 및 쪽수를 표기하는 방법

예) (김세무 1989) - 단독연구의 문헌인용

(김세무 1989, 27) - 단독연구의 문헌인용(p. 혹은 pp.은 표시하지 않음)

(김세무·이세무 1990, 217-218) - 2인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김세무 외 1988, 12) - 3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김세무 외 1988, 12 ; 오성·한음 1990, 217) - 둘 이상의 문헌인용

(김세무 1999a, 12 ; 1999b, 22) - 같은 연도의 동일 저자에 대한 문헌인용

(Kim 2005) - 단독연구의 문헌인용

(Kim 2005, 120) - 단독연구의 문헌인용(p. 혹은 pp.은 표시하지 않음)

(Kim and Lee 2005) - 2인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Kim et al. 2005) - 3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Kim 2004 ; Lee 2005) - 둘 이상 다른 저자의 문헌인용

(Kim 2004, 2005) - 동일인 단독연구의 둘 이상 문헌인용

(Kim 2005a) - 동일연도 동일인 단독연구의 문헌인용

(Kim 2005b ; Lee 2004a) - 동일연도 동일인 단독연구가 둘인 경우 문헌인용

(AICPA Cohen Commission Report 1977) - 기관보고서의 인용

I.R.C. § 1248(a) - 미국세법 법률인용

Treas. Reg. § 1.1248-3(a)(4) - 미국세법 시행령인용

Rev. Rul. 82-1, 1982-1 CB 417 - 미국세법 시행규칙인용

a. 논문본문에서 저자명을 직접 언급할 때에는 저자명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예) 홍세무(2003)에 의하면,

Beaver(2002)에 의하면,

(3) 저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이름을 모두 열거하거나, 아무개 외(영문일 경우는 et al.)라고 줄인다.

4)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 표시해야 하며, 인용되지 않고 단순히 참고한 것은 표시해서는 안된다.

(2) 서적과 논문의 구별없이 동양문헌(국내문헌을 가장 앞에 놓음), 서양문헌 순으로 배열한다. 저자의 이름을 기준으로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은 ABC순으로 각각 배열한다. 같은 저자의 문헌을 같은 연도에 2개 이상을 인용한 경우 연도표시는 2002a, 2002b 등으로 표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저서, 논문, 기타 등으로 먼저 구분하고 각각의 안에서 위의 기준에 따라 배열한다.

(3) 서양문헌의 저자명은 성(Family name)을 앞에 적고 이름(given name)을 뒤에 적은 다음 abc순으로 배열한다. 단, 공동저자의 저자명은 그렇지 않다.

예) R. A. Musgrave → Musgrave, R. A.

(4) 일본인과 중국인 저자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경우에는 현지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 문헌의 경우 출판사를 생략한다.

(5) 법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① 본문의 경우 : 000법 제00조 제00항

② 괄호의 경우 : 000법 00조 00항

(6) 판례 등을 인용하는 경우

① 대법원 1996.4.26 선고, 96다1078 판결(공1996상, 1708).

* 공1996상, 1708→법원(판례)공보 1996년 상권, 1708면

② 대법원 1995.11.16 선고, 94다56852, 56853 전원합의체 판결(집43-2, 316).

* 집43-2, 316→대법원판례집 제43권 2집 316면

③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1.18 선고, 94가합10574 판결(하집 1995-1, 67).

* 하집1995-1, 67→하급심판결집 1995년 제1권 67면

(7) 참고문헌의 서적과 논문은 다음의 예와 같이 표기 한다. 단, 인용문헌을 본문의 주석에 표시한 경우는 주석의 표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표기하되, 구체적인 인용페이지는 표기하지 않으며 논문의 경우는 전체 논문의 해당페이지를 표시한다.

예) 김세무. 2000. “한국조세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제1권 제1호: 5-24.

김세무이세무. 2002a. “미국조세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제3권 제2호: 15-34.

. 2002b. “중국조세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제3권 제3호: 25-45.

김세무. 2003. 「세무학개론」 제2판. 세학사.

국세청. 2005. “아프리카의 세금” . [http://www.nts.go.kr/\(생략\)/...htm](http://www.nts.go.kr/(생략)/...htm).

대법원. 1997.11.8. 선고. 97다118 판결.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 for External Financial Reports. 1977. *Statement on Accounting Theory and Theory*

Acceptance. Sarasota, FL: AAA.

Auerbach, A., and K. Hassett. 1990. Investment tax policy and the Tax Reform Act of 1986. In *Do Taxes Matter: The Impact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edited by J. Slemrod. Cambridge, MA: MIT Press.

Bedard, J. C., and S. Biggs. 1990. Pattern recognition, hypothesis generation, and auditor performance in analytical review.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onnecticut.

Boness, J., and G. Frankfurter. 1977. Evidence of non-homogeneity of capital costs within risk classes. *Journal of Finance* (June): 775–787.

Hendershott, P. H., and D. C. Long. 1984a. Trading and the tax shelter value of depreciable real estate. *National Tax Journal* 37 (2): 213–214.

 , and . 1984b. Prospective changes in the tax law and the value of depreciable real estate. *American Real Estate & Urban Economics Association Journal* 12 (Fall): 297–317.

Slemrod, J., ed. 1990. *Do Taxes Matter : The Impact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Cambridge, MA: MIT Press.

Taussig, M. K. 1967. Economic aspects of the personal income tax treatment of charitable contributions. *National Tax Journal* 20 (1): 1–19.

U.S. Congress, House. 1975. *Tax Equity Bill of 1975* [H.R. 1040]. 94th Cong., 1st Sess.

Witte, A. D., and D. F. Woodbury. 1985.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38 (1): 1–14.

5) 위의 논문작성 지침의 내용은 논문의 내용, 각 연구분야별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